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도 의회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 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 의회에서 선임한다.

② 도 의회의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표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 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도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두되 도의회 의원인 위원중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도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수 있다.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도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위원의정수)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p> <p>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검사위원 5인 중 당해 지방의회 의원 1인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선임 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② 삭제</p> <p>③ 도의회 의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④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
⑤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지방의회 -----	④ 도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의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제5조(경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상근직원을 경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②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자는 위원이 될수 없다</p>		
<p>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p> <p>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 하되 지방의회의 위원인 위원이 된다.</p>		<p>③ 산.제</p> <p>제6조(대표위원) ①위 원중에서 대표위원 1 인을 두되 도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선출 한다</p>
<p>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p>		<p>②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p> <p>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입·세출의 결산</li> <li>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li> <li>3. 채권 및 채무의 결산</li> <li>4. 재산 및 기금의 결산</li> <li>5. 금고의 결산</li> </ol> <p>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p>		<p>②지방공기업법 제2조</p> <p>-----</p> <p>-----</p> <p>-----</p> <p>-----</p> <p>-----</p> <p>회계감사로 이를 갈음 할수있다.</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 도 일비를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p>		<p>-----</p> <p>-----</p>